

직원교육 일지

담당	센터장

구 분	2026년 02월 직원 교육
일 시	2026년 02월 25일 (수) ~ 27일 (금)
시 간	1부: 13:00 ~ 14:00 / 2부: 17:00 ~ 18:00
장 소	로템재가복지센터 사무실
교육명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노인인권 보호 지침
교육내용	※ 진행자 : 김현숙 실장, 김영중 센터장 (1부와 2부 교육 내용 동일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 유형 (교육자료 참조) 1. 육체적 행위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주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3. 시각적 행위 :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4. 기타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5. 좁은 의미의 성폭력 행위(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허위 영상물 반포 등 ▣ 성폭력의 예방 (교육자료 참조) 1. 기관 내 성폭력 발생 예방 2. 기관장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 ▣ 대응 방법 (교육자료 참조) 1. 개인의 대처 방법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2. 기관에서의 대처 방법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3.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 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

다.

■ 사건 처리 절차 (교육자료 참조)

1. 상담신청, 신고, 인지
2. 접수 및 조사
3. 사건의 종결

● 노인인권 보호 지침

■ 노인권리 보호 (교육 자료 참조)

대표자, 직원,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유형 (교육 자료 참조)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자기 방임) 6. 유기

■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참조)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상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교육 자료 참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577-1389)

1. 기관은 수급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수급자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수급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특이사항 & 비고	
첨부	1. 직원교육 참석자 명단 2. 교육 자료